

[첨부자료3]

이 사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활동 계획 (변호사 채희준)

■ 이 사건에 대한 평가

1.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 종업원들

통일부 대변인이 2016. 4. 8. 긴급브리핑을 통해 종업원들의 집단입국을 발표한 때는 4. 13. 총선을 5일 앞 둔 때이었다. 그리고, 통일부 대변인은 그 날 긴급브리핑 직후와 4. 11. 정례브리핑 직후 기자들에게 ‘이들의 집단입국은 남한의 독자적 대북 제재의 효과’ 라고 설명하였고, 탈북 및 한국 입국 사실 공개에 관하여 종업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종업원들이 집단입국한 지 단 하루만에, 탈북자의 신변안전과 북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위 등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관행을 깨고 전격 발표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의 효과로 선전하고 싶었던 것이고, 4. 13. 총선에서 유리한 북한 이슈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2. 다시 확인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종업원들은 집단입국 직후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되면서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되었다. 변호사의 접견도, 종교인의 면담도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인도적 차원에서 전달을 요청한 메모와 필기구, 신영복 교수의 저서 등도 거부되었다.

나아가, 국가정보원장은 이들에 대해 보호결정을 한 이후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의적 결정으로 이들을 통일부의 정착지원시설(하나원)로 보내지 않고 여전히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하면서 외부와의 접견교통을 철저하

게 차단하였다.

중앙합동신문센터를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바꾸고 인권보호관을 두었다고 선전하였지만, 수용된 탈북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짓밟는 실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3.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애써 외면해 버린 사법부

인신구제 청구사건에서 제1심 재판부(이영제 판사)는 청구위임인들이 종업원들의 각 부모인지, 현 상황이 자의적·자발적인지 종업원들로부터 확인한다면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각하하였다. 제2심 재판부도 수용자가 작성한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서류 한 장만 믿고 청구이익이 없다며 단 한 차례의 심문기일도 열지 않은 채 그대로 각하하였다.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사건에서 사법부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북한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서 보여주었던 소극적 태도를 넘어 아예 ‘재판을 하기 싫다’는 태도이었다. ‘정당한 재판’은 헌신짝처럼 버려졌고,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는 찾아 볼 수 없었다.

4. 지독한 사회적 병폐 - 중복타령

20대의 딸이 해외에서 근무 잘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 자신이 갈 수가 없는 곳이고 어찌면 평생 다시 볼 수도 없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집단적·집체적으로 생활해 온 12명의 종업원들 중 혹시 단 1명이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아서 한국에 들어 와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사람의 문제이고 인권에 관한 사안이지 이념이나 체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변호인들이 접견을 통해, 인신구제 청구를 통해 종업원들의 진정 자의로 한국에 들어 온 것인지 확인하려고 할 때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죽는다’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들의 집단입국을 발표하였을 때 이미 그 가족들은 죽었을 것이다. 자기 딸을 만나 안위를 확인해 달라는 부모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들에 대해 ‘북변’, ‘중북’과 같은 비이성적·반인권적인 공격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특히나 이런 공격이 같은 법조계에 있는 자들로부터도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왜 한국에 들어 와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하여는 이념이나 체제로 덮어버리는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계기로 이제는 지긋지긋한 중북타령도 끝내야만 한다.

■ 향후 활동 계획

1. 사법적 활동

인신구제 청구사건 및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이 각 대법원에서, 제1심 제2회 변론기일(2017. 2. 23. 11:10)이 예정되어 있는 접견거부처분 취소 청구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각 진행 중.

2.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의 심의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를 공표할 예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보호신청 철회를 명문화, 임시보호와 정착지원의 주체를 통일부로 일원화, 최소한 현행 난민법의 수준에는 이를 수 있도록 인권보장을 제도화, 현

재 혼용하고 있는 행정조사와 수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수사를 받는 경우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

4. 현재까지 확인된 집단입국 관련 사실 정리·발표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지속

변호인들이 현재까지 확인한, 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한 전·후 사실관계 등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

끝.